

#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변 호	608
------------	-----

2019. 4. 22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안 건 명 :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 2. 제안이유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였고 공청  
회 등 관련 절차를 추진 중으로,

나. 「2025 서울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신규지정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신규지정
  - 기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경계조정

## 4. 추진경위

- 2018. 7.5.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확정 공고
- 2018. 9.21.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신규선정(5개소)
- 2019. 1. 3. 2019년 도시재생뉴딜 공모 가이드라인발표
- 2019. 4.11.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공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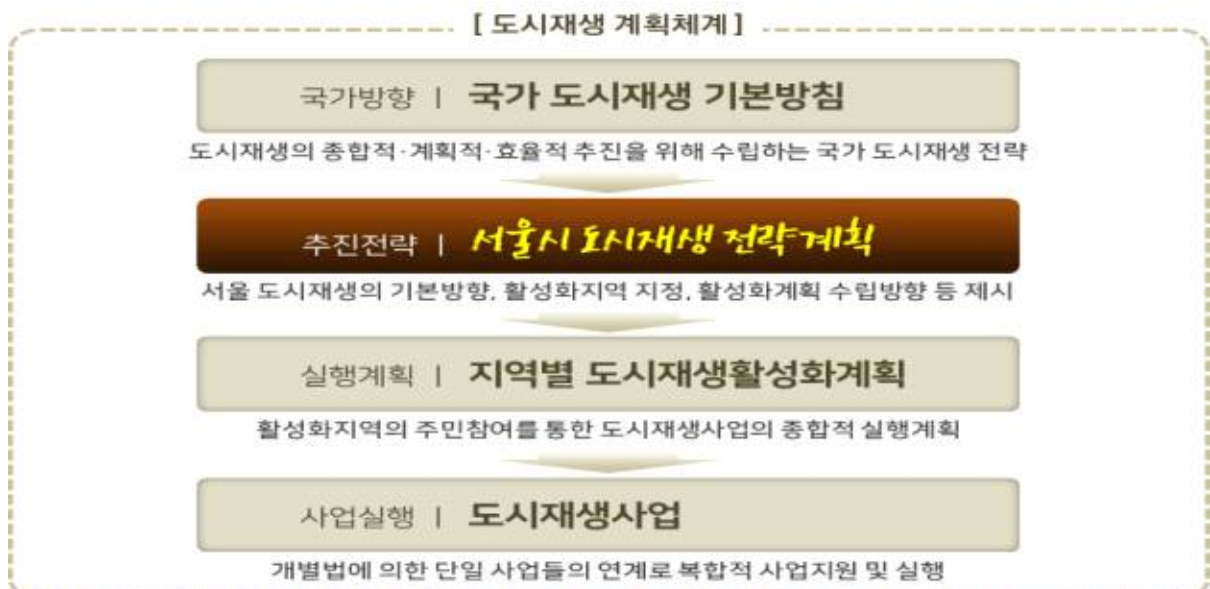
##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5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의견청취사항

## 6. 검토의견

### □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제출배경

-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12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서울형 도시재생의 기본방침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하, “활성화지역”)의 운영과 실행체계를 정하는 도시재생분야의 상위 계획임. 도시재생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활성화지역 지정과 활성화계획 수립방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활성화지역의 실행계획이라 할 수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됨.



- 전략계획 변경은 2015년 최초 계획 수립 후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임. 2018년 변경된 전략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계획의 체계를 '도시재생 기본방침'과 '운영기준', '실행 및 지원'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매년 진행되는 활성화지역 신규 선정 및 변경에 대응하고자 하였음. 활성화지역 운영기준 중 '활성화지역 선정 및 변경기준'은 '간소한 전략계획 변경절차'<sup>1)</sup>를 통해 신규 또는 변경지역을 반영하려는 것임.
- 2020년 전략계획 재정비 시점이 도래하여 현재 서울시가 전략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총예산4억, '19년 2.5억원)임에도 금번 전략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이유는 기 지정된 활성화지역 일부를 변경하고, 이와 함께 2018년 전략계획 변경 이후 신규 선정된 활성화지역을 전략계획으로 우선 확정함으로써, 금년 하반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뉴딜사업 공모(붙임 1 참조)에 참여하기 위함임.
- '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19.1.8)에 따르면, 뉴딜사업 공모신청은 활성화지역 중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한 지역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2019년 국토부가 서울시에 배정한 광역 공모 물량 7개소(근린재생형 5개소, 우리동네살리기 2개소)에 대한 공모신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활성화지역 확정을 위한 전략계획 변경이 필요함.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주요 체계>**

<b>기본방</b>	<b>1/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 도시재생 범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전 및 목표 실현을 위한 20개 과제 도출</li> <li>· 활성화지역 중심에서 활성화지역 이외까지 '서울형 도시재생' 확장</li> <li>※ 캠퍼스타운,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등</li> </ul>
------------	------------------------------------	--

1) 법정절차(공청회→관계기관협의→시의회의견청취→도시재생위원회)는 진행하되, 변경사항은 이미 선정된 신규지역의 지정 및 기 결정된 지역의 변경으로 한정

침	2/ 도시재생 유형 다양화	· 서울형 도시재생 유형제시 (법정사업 + 도시재생개념 적용사업) -일자리거점 육성형, 중심지 특화형, 근린재생형 + 거점확산형
	3/ 권역별 도시재생 구상	· 쇠퇴현황 + 생활권계획 권역별 이슈+ 광역교통망 + 방재안전 사항을 반영하여, '권역별 도시재생구상' 마련
운영 및 실행 체계	4/ 활성화지역 선정 및 운영기준	· '계획 및 실행단계' 통합한 '도시재생 3단계 프로세스' 명시 · 활성화지역 선정 및 변경기준 구체화 - 범죄율, 생활 인프라 등 현실성 있는 활성화지역 선정지표 반영
	5/ 실행주체 역할정립	· 국토부(정책 및 제도개선), 서울시(전략 및 계획수립), 자치구(실행 기능강화)간 역할 정립 · 서울시 부서간, 시구간 행정협의체 정례화 ·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기구 역할 확립
	6/ 지원체계 정비	· 도심활력프로젝트, 지역재생전문관 제도 도입 등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마련 · 주택도시기금의 활용범위 확대 등 재원 다양화

< '19년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선정규모 >

구분	시·도 선정		중앙정부 선정			
			지자체 신청		공공기관 제안	
신청·제안	구청장		시장, 구청장(근린재생형))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시장(구청장)	
평가주체	시·도지사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신청 사업유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5개 사업유형	
선정규모	70개소 내외		20개소 내외		10개소 내외 (5개 사업유형)	
선정시기별 선정물량	3월	하반기	3월	하반기	3월	하반기
신청 가능지역	신청 공고일 현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최종 평가 시작 전까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 가능한 지역					

\* 우리동네살리기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쇠퇴도 요건은 충족 필요), 다만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면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지원이 가능

\* 출처: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2019.1)

□ 2025 전략계획 변경(안) 주요 내용

1) 기존 활성화지역 변경 (2개소)

- 기존 활성화지역의 변경사항은 서울역일대 활성화지역의 사업유형 변경과 천연·충현 활성화지역의 규모 변경임.



- 서울역일대 활성화지역은 당초 전체 구역(1,955,333㎡)의 계획 유형이 ‘경제기반형’이었으나, ‘18년 7월 전략계획의 변경을 통해 서계동 지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123,546㎡)의 계획 유형을 경제기반형에서 근린재생 일반형으로 변경<sup>2)</sup>한 바 있음.

2) 이는 활성화 지역 중 서계동 일대를 기존 ‘경제기반형’으로 정할 경우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거지 환경개선에 한계가 존재하며, 정부뉴딜사업과의 연계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상 자율주택정비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를 위해서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기 반영되어야하기 때문임.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 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반영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취약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4.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금번 전략계획 변경(안)은 서계동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18,818㎡)의 사업유형을 ‘근린재생 일반형’으로 변경하여 서계동의 지역특성 및 주거지재생사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천연·충현 활성화지역의 경우는 당초 전략계획에 반영된 구역 면적의 일부 면적 오류를 정정(1,780㎡ 증가)하기 위한 것임.

## 2) 활성화 지역 신규 지정 (10개소)

- 활성화지역 지정 전 사전단계 사업인 희망지사업을 통해 3단계 활성화지역으로 2018년 9월 선정된 5개소와 금년 상반기에 선정된 5개소<sup>3)</sup>를 전략계획으로 신규 지정하려는 것으로, 이 중 일부 지역은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공모 사업에 신청<sup>4)</sup>할 계획임(붙임 2 참조).
- 참고로, 전략계획으로 확정할 활성화지역은 모두 일반근린형과 주거지지원형으로, 이 중 금년에 선정된 5개소는 ‘2019년 국토부의 유형별 뉴딜공모 권장 면적기준’(5만~15만㎡)을 충족하는 지역임.

구분	활성화지역				우리동네 살리기*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근린일반형	주거지지원형	
뉴딜사업 권장면적	50만㎡ 내외	20만내외㎡	10~15만㎡	5~10만㎡	5만㎡ 내외
서울시 활성화지역 (1~2단계)	50~160만㎡ ※ 서울역, 장안평 조성가능	20~60만㎡	30~50만㎡		1~5만㎡ 내외

5.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3) 주거지 도시재생 희망지사업('18.12) → 활성화지역 신규 선정(5곳, '19. 4월)

4) '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10개소 신청·선정 추진 예정

- ▶ 중심지 3개소 : 장안평·홍릉(경제기반형), 세운상가(중심시가지형)
- ▶ 주거지 7개소 : 일반근린형·주거지지원형(5), 우리동네살리기(2)

## 활성화지역 신규 지정 (총 10개소)

### '18년 9월 선정 (일반근린형)

• 송정동	성동구 송정동 일대	203,698㎡
• 인수동	강북구 인수동 416번지 일대	366,551㎡
• 도봉동	도봉구 도봉동 625번지 일대	96,615㎡
• 사당4동	동작구 사당4동 전역	380,000㎡
• 성내2동	강동구 성내2동 일대	420,000㎡

### '19년 3월 선정

#### [일반근린형]

• 응암3동	은평구 응암동 754번지 일대	148,043㎡
• 중화2동	중랑구 중화2동 327-85번지 일대	140,855㎡

#### [주거지지원형]

• 사근동	성동구 사근동 212-1번지 일대	100,000㎡
• 신월3동	양천구 신월3동 192번지 일대	100,800㎡
• 구로2동	구로구 구로2동 713번지 일대	100,550㎡



## □ 검토사항

- 금번 전략계획 변경안은 종전 활성화지역의 면적 변경 및 사업계획 유형변경, 그리고 서울시가 새로 선정한 활성화지역을 전략계획으로 확정하는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 서울시는 활성화지역 선정 사전단계사업으로 2016년부터 매년 희망지사업과 거버넌스 구축사업을 통해 활성화지역을 선정해 왔으며, 앞으로도 추가 선정할 예정에 있음. 또한, 마중물예산의 투자와 재생사업의 추진을 통한 시민의 도시재생사업 체감도 향상과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시마다 매년 전략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임.
- 그러나, 도시재생법 상 전략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시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며(제12조제1항5), 전략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

5)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에는 도시재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sup>6)</sup>을 제외하고는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관련기관 협의, 지방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sup>7)</sup>, 활성화지역의 지정이나 변경이 필요할 때마다 전략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 **전략계획의 내용**

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2.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3.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6.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 (변경시 경미한 사항)
7. 지방정부 자원조달 계획
8. 지원조례, 전담조직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변경시 경미한 사항)
9.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수립하는 사업 계획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략계획 내용 중 ‘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변경 사항’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하고, 전략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시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같이 사전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전략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시재생법 개정 건의안을 국토부에 제출하였음.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

6) 경미한 사항의 변경 경우에는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생략됨.

7) 도시재생법 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재생법 제16조(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확정)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더불어 도시재생사업은 규제가 아닌 지원 및 활성화 사업에 해당하고, 활성화지역 지정 후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지역 지정의 의미가 없으며, 활성화계획 수립 시 해당지역의 사업내용 및 구체적 사업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는 바,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지역을 선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전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토록 하는 등 전략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차 간소화 논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담당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임경숙
연락처	02-2180-8205
이메일	kslinga@seoul.go.kr

<b>붙임 1</b>	<b>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b>
-------------	---------------------------

'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방향 (국토부 가이드라인, '19.1)

- 선정물량 : 100곳 내외(시·도선정사업 70곳, 중앙선정 30곳)
  - 시도선정 : 예산총액 내 중소규모 사업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 살리기)
  - 중앙선정 : 중심시가지형 15곳, 경제기반형 5곳, 공공기관 제안방식 10곳
- 선정시기 : 3월중 전체물량 30%, 하반기 70%
- 선정대상 : 활성화계획(안) 완료지역(2월중 공청회 개최)

**< '19년도 선정규모 >**

구분	시·도 선정		중앙정부 선정			
			지자체 신청		공공기관 제안	
신청·제안	구청장		시장, 구청장(근린재생형))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시장(구청장)	
평가주체	시·도지사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신청 사업유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5개 사업유형	
선정규모	70곳 내외		20곳 내외		10곳 내외 (5개 사업유형)	
선정시기별 선정물량	3월	하반기	3월	하반기	3월	하반기
	14곳 내외	56곳 내외	5곳 내외	15곳 내외	3곳 내외	7곳 내외
신청 가능지역	신청 공고일 현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최종 평가 시작 전까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 가능한 지역					

서울시 참여대상

- 시장안정기준을 마련하여 선별후 신청
  - 중앙정부 선정 사업은 공공기관 제안형만 가능
  - 광역지자체 선정규모로 서울은 7곳 물량 배정(우리동네살리기 2)

\* '17.08.02 8.2부동산대책 이후 누적 집값상승률이 평균 이하인 기초자치구  
 '18.09.13 9.13부동산대책 이후 누적 집값상승률이 평균 이하인 기초자치구  
 (우리동네살리기만 가능)

<b>붙임2</b>	<b>중심지 도시재생후보지 8개소 및 주거지도시재생지역 5개소</b>
------------	--

○ **중심지(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후보지 8개소('19.4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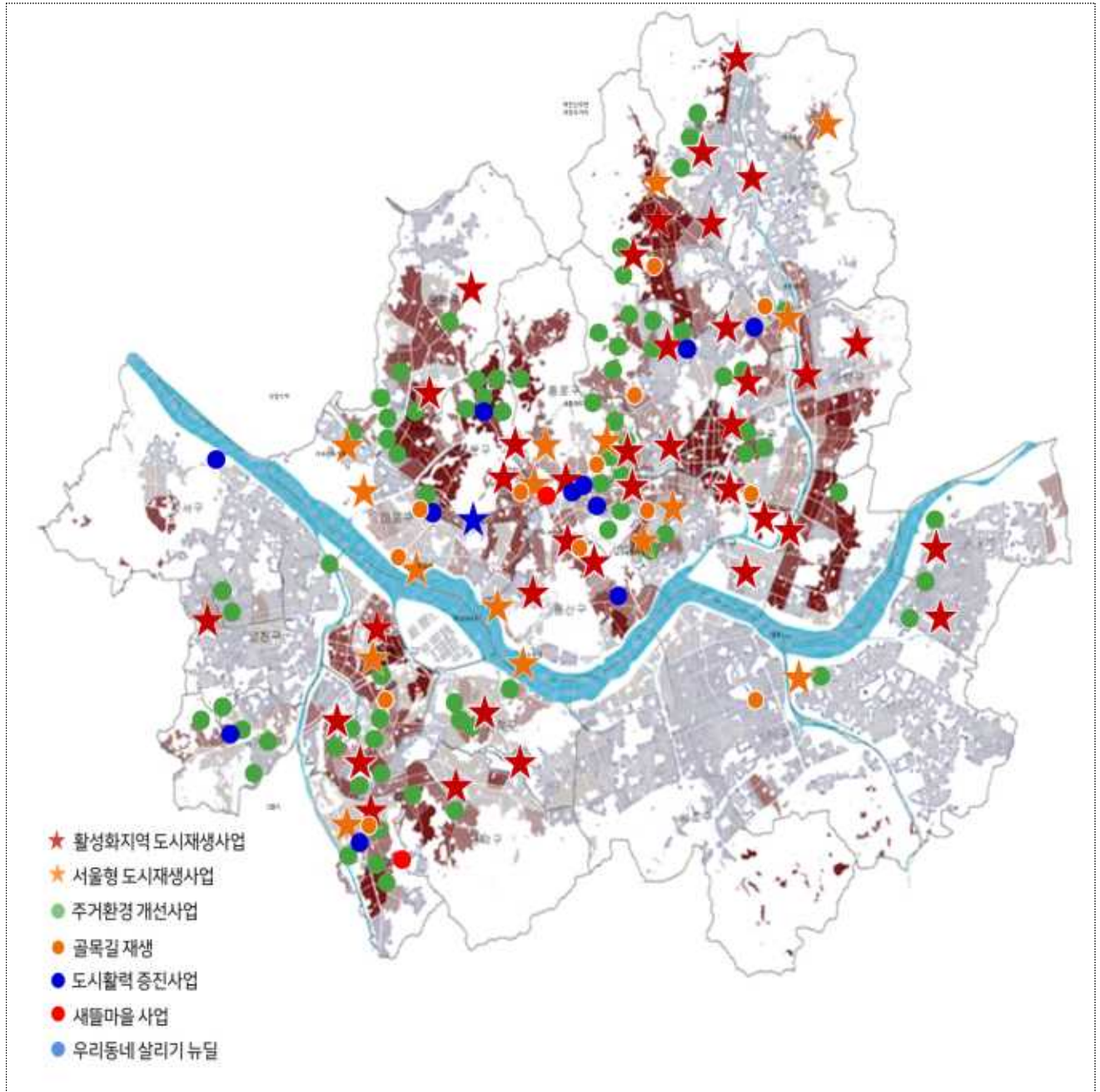
구분	연번	지역	면적 (㎡)	목표
경제기반형	1	<b>홍릉일대</b>	50만	- 지역기반 산업 콘텐츠를 연계한 홍릉 연구도시 조성
중심시가지형	1	<b>광화문일대</b> (역사문화특화)	20만	- 광화문 광장주변의 연계성 강화
	2	<b>북촌 기호동 일대</b> (역사문화특화)	27만	- 한옥의 정주환경과 역사문화 자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	<b>효창공원일대</b> (역사문화특화)	19만	- 백범김구 등 독립운동가 묘역의 가치 회복 및 지역 활성화
	4	<b>면목동</b> (도심산업육성)	21만	- 패션봉제 허브조성으로 도심제조업(봉제) 활력도모
	5	<b>구의역일대</b> (도심상업육성)	20만	- 광진구청이전부지 주변 IT문화마케팅 거점 조성
	6	<b>홍제 역세권</b> (시장활성화형)	17만	- 인왕시장 재정비와 지하보행네트워크 거점 구축
	7	<b>풍납토성 일대</b> (역사문화특화)	26만	- 풍납토성 주변 역사재생으로 지역 상생 및 관광 활성화

○ **주거지 도시재생지역 5개소 ('19.4월 선정)**

연번	자치구	지역	면적 (㎡)	목표
1	성동구	사근동 212-1번지 일대	10만	노후한 청계천변 구릉지 저층주거지
2	은평구	응암3동 일대	14만	'70년대 자력재개발로 형성된 주택단지
3	양천구	신월3동 192번지 일대	11만	김포공항 인접한 '70년대초 형성된 주거단지
4	구로구	구로2동 일대	10만	과거 구로공단 배후주거지로 오랜 서민 주거지역
5	중랑구	중화2동 일대	14만	'67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형성된 주거지

□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161개소

- 법정 활성화지역 37개소를 포함하여, 총 161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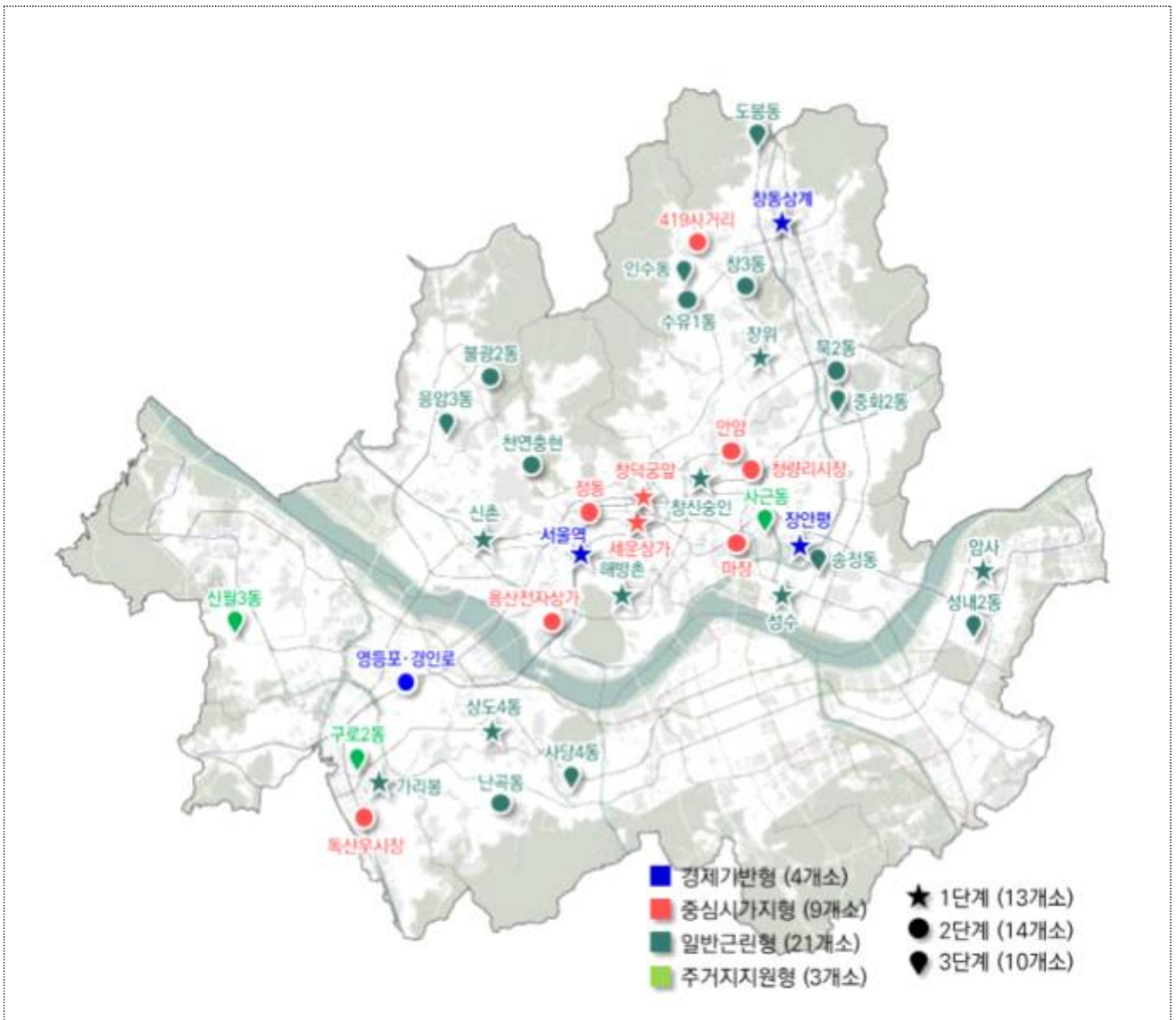
[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총괄 현황 ]

서울형 유형	사업명	관련법	개소수	대상지
일자리거점 육성형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서울역, 창동·상계, 장안평</li> <li>• (‘17)영등포·경인로</li> </ul>
생활중심지 특화형	중심시가지형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세운상가,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정동,</li> <li>• (‘17)용산전자상가, 마장동, 청량리, 안암동, 4.19사거리, 독산우시장</li> </ul>
	일반근린형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 창신·송인, 가리봉, 해방촌, 성수, 신촌, 암사, 장위, 상도4동,</li> <li>• (‘17)창3동, 천연·충현동, 목2동</li> <li>• (‘18)송정동, 인수동, 도봉2동,사당4동, 성내2동</li> <li>• (‘19)사근동, 응암3동</li> </ul>
	주거지지원형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수유1동, 불광2동, 난곡동</li> <li>• (‘19)신월3동, 구로2동, 중화2동</li> </ul>
주거지 재생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남동, 정릉동1, 미아1 등 76개소</li> </ul>
	도시활력증진사업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동 서애길 활성화 계획 등 11개소</li> </ul>
	새뜰마을사업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천구 암탉우는 마을, 돈의동 쪽방</li> </ul>
	우리동네살리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기동, 독산1동</li> </ul>
거점 확산형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비법정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운대역, 상암·수색,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서남권 G-Valley, 세종대로, 석유비축기지, 노들섬, 여의도일대 한강협력사업, 서촌, 돈의문 박물관 마을, 남산예장자락, 백사마을</li> <li>• 현대차 미래연구소, 동부제강 부지 (*성곽마을 -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중복)</li> </ul>
	골목길재생사업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암동 두텁바위로40길 일대, 성북동 선잠로2가길 일대</li> <li>• 운니익선동 삼일대로32길 일대, 장충동2가 퇴계로 56가길 일대, 독산동 시흥대로101·103길 일대 용답동 용답21길 일대, 수유동 삼양로73가길 일대, 월계동 광운로13·15·17길 일대, 천연동 독립문로12길 일대, 합정동 토정로4길 일대, 연남동 동교로51길 일대,</li> </ul>
4개 유형	10대 사업		161	



##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7개소 지정·운영

- 중심지형 도시재생지역(13개소) : 경제기반형(4개소), 중심시가지형(9개소)
  - ▶ `15년(5개소), `17년(8개소)지정
- 주거지형 도시재생지역(24개소) : 일반근린형(18개소), 주거지지원형(6개소)
  - ▶ `15년(8개소), `17년(6개소), `18년(5개소), `19년(5개소)



<서울시 중심지 도시재생지역>

구분	유형	연번	지역	면적(m <sup>2</sup> )	지역산업 특성	추진 현황
'15	경제 기반형	1	서울역	1,725,000	(기존산업) 봉제업 (신규도입) 서울로 등 보행활성화,관광	고시('17.12.23)
				123,000		
		2	창동·상계	980,000	서울아레나	고시('17.3.2)
	3	장안평	500,000	도심산업육성 (자동차 재제조, 모빌리티)	고시('17.8.4) 변경용역발주(19)	
	중심 시가지형	4	세운상가	440,000	도심산업육성 (공구 등 제조업, 4차산업)	고시('17.6.1) 변경용역발주(1812)
5		낙원상가	340,000	역사문화특화 (창덕궁)	고시('18.5.10)	
'17	경제 기반형	6	영등포 경인로	780,000	금속 등 도심산업과 핀테크 육성	계획수립중
	중심 시가지형	7	정동	600,000	역사문화특화 (덕수궁등)	계획수립중
		8	용산 전자상가	210,000	도심산업육성 (전자산업창업 및 로봇산업 등)	계획수립중
		9	마장동	550,000	시장활성화형 (축산물 유통)	계획수립중
		10	청량리·제기동	490,000	시장활성화형 (약령시 등 11개 종합시장)	계획수립중
		11	4.19 사거리	630,000	역사문화특화 (4.19묘지 등)	계획수립중
		12	독산동 우시장 (뉴딜사업)	490,000	시장활성화형(축산물) ※ '19. 국토부 뉴딜사업 선정지	계획수립중
13	안암동	170,000	대학가활성화형(고려대 캠퍼스타운)	계획수립중		

<서울시 주거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구분	유형	연번	지역	면적(m <sup>2</sup> )	지역사업 특성	추진 현황
'14	근린재생 일반형	1	종로구 창신·송인	830,130	뉴타운 해체지역, 봉제산업 특화	잔여사업추진중 (사업기간: '14~'17)
'15	근린재생 일반형	2	성동구 성수동	886,560	주거·산업 혼재지역, 수제화 특화	잔여사업추진중 (사업기간: '15~'18)
		3	성북구 장위동	318,415	뉴타운 해체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잔여사업추진중 (사업기간: '15~'18)
		4	서대문구 신촌동	432,629	대학-지역 연계 도시재생추진	잔여사업추진중 (사업기간: '15~'18)
		5	동작구 상도4동	726,512	구릉지 노후주거지 대한 주거환경개선	잔여사업추진중 (사업기간: '15~'18)
		6	강동구 암사동	634,885	자연·역사·사회적 자원요소 활용	잔여사업추진중 (사업기간: '15~'18)
'16	근린재생 일반형	7	용산구 해방촌	332,000	남산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	사업추진중 (사업기간: '16~'20)
		8	구로구 가리봉	332,929	구로공단 배후지로 연변거리 등 중국동포 밀집	사업추진중 (사업기간: '16~'20)

구분	유형	연번	지역	면적(m <sup>2</sup> )	지역사업 특성	추진 현황
'17	근로자생 일반형	9	도봉구 창3동	339,500	침체된 창동골목시장 등 활성화	활성화계획수립중 (사업기간: '17~'22)
		10	강북구 수유1동 (뉴딜사업(주거지원형))	514,326	북한산 최고고도지구 및 쇠퇴중인 저층주거지 ※ '18. 국토부 뉴딜사업 선정지	활성화계획수립중 (사업기간: '17~'22)
		11	은평구 불광2동 (뉴딜사업(주거지원형))	586,400	노후, 쇠퇴하고 있는 저층주거지 ※ '18. 국토부 뉴딜사업 선정지	활성화계획수립중 (사업기간: '17~'22)
		12	관악구 난곡남향동 (뉴딜사업(주거지원형))	270,795	노후, 쇠퇴하고 있는 저층주거지 ※ '18. 국토부 뉴딜사업 선정지	활성화계획수립중 (사업기간: '17~'22)
		13	중랑구 목2동 (뉴딜사업(일반근린형))	530,000	'15년 뉴타운 해제 노후 저층주거지 ※ '18. 국토부 뉴딜사업 선정지	활성화계획수립중 (사업기간: '17~'22)
		14	서대문구 천안충현동 (뉴딜사업(일반근린형))	290,000	영천시장, 근대역사자원 주변 저층주거지 ※ '18. 국토부 뉴딜사업 선정지	활성화계획수립중 (사업기간: '17~'22)
'18	근로자생 일반형	15	성동구 송정동	203,698	중랑천송정제방변 저층주거지	활성화계획수립중 (사업기간: '18~'23)
		16	강북구 인수동	366,551	북한산 최고고도지구의 노후저층주거지	활성화계획수립중 (사업기간: '18~'23)
		17	도봉구 도봉2동	96,615	재개발, 재건축 해제한 저층 주거지	활성화계획수립중 (사업기간: '18~'23)
		18	동작구 사당4동	380,000	노후, 쇠퇴하고 있는 저층주거지	활성화계획수립중 (사업기간: '18~'23)
		19	강동구 성내2동	420,000	노후, 쇠퇴하고 있는 저층주거지	활성화계획수립중 (사업기간: '18~'23)
'19 상반기	근로자생 일반형	20	성동구 사근동	100,000	청계천변 구릉지 노후 저층주거지	센터구성중 (사업기간: '19~'23)
		21	은평구 응암3동	148,043	'70년대 자력재개발로 형성된 노후 주택단지	센터구성중 (사업기간: '19~'23)
		22	양천구 신월3동	100,800	김포공항 인접한 노후 주거단지	센터구성중 (사업기간: '19~'23)
		23	구로구 구로2동	100,550	과거 구로공단 배후주거지	센터구성중 (사업기간: '19~'23)
		24	중랑구 중화2동	140,855	'67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형성된 저층 주거지	센터구성중 (사업기간: '19~'23)